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임원의 선임 절차 부적정

[소속기관] 경기도육상연맹

[내용]

1. 업무개요

경기도육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20**.**.**. 20**년도 제*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맹 임원보선의 건’ 등 6개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이날 연맹은 김** 이사 등 3명(김**, 박**, 박**)에 대한 임원보선(안)을 심의하였고, 2*명중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동의를 얻어 동 안건을 의결하였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육상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22조에서는 연맹 임원에 대한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원의 ‘보선’에 관하여는 같은조 제5항¹⁾에 따라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장에 임원 선임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결원이 발생하여 이사회에서 보선을 통해 임원을 선임할 경우 차기 총회에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연맹 「규약」 제22조(임원의 선임)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 하되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20**.**.**. 20**년도 제*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박**, 박**, 김** 이사 3명에 대하여 임원보선에 대한 심의를 다루었고, 당일 참석한 이사 전원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을 의결하였다. 임원보선의 경우 연맹 「규약」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차기총회에 해당하는 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20**.**.**) 확인결과 보고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임원 보선 관련 절차상 하자로 판단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육상연맹 회장은

향후 임원선임시 「규약」에서 정한 선임 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이행되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임원(상기 이사 3명)의 경우 再 선임과정을 거치는 등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주 의 조 치

[제 목] 대의원총회 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육상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육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20**.**.**. ‘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고, 재적대의원 2*명중 1*명 참석하여 보고안건 *건과 심의안건 *건을 각각 처리하였다. 심의안건중 연맹 ‘감사’에 대한 선임안건이 상정되었는데, 행정감사로 기존에 감사 직무를 수행하던 **시육상연맹 회장(노**)재선임을 의결하였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 ‘감사’(행정·회계)의 경우 「경기도육상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22조제6항²⁾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의 경우 동조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제7조제1항의 대의원(시군육상연맹의 장 또는 경기도 규모연맹체의 장)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 「규약」제7조제6항에서는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연맹의 대의원이 되도록 규정하여 임원과 대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7조제8항³⁾에서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

2) 연맹 「규약」 제22조(임원의 선임)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제1항의 대의원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을 선임하여야 한다.

3) 연맹 「규약」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⑧본 연맹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20**.**.**. '20**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고, 당일 재적대의원 2*명중 1*명이 참석하여 성원을 이루고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당일 대의원의 참석현황을 기록한 참석서명부를 살펴보면 행정감사직을 수행하던 자(노** / **시육상연맹 회장)가 '감사'가 아닌 해당 시군의 회장(대의원)으로 서명되었으며, 회의록 또한 성원보고시 해당인을 포함한 참석인원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즉, 연맹은 「규약」에 따라 임원(행정감사)이 된 해당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여 총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직무외 성원이나 의결에서 배제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조치사항] 경기도육상연맹 회장은

「규약」에서 정한 대의원의 임원 선임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의 총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소속기관] 경기도육상연맹

[내용]

1. 업무개요

경기도육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경기위원회 3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 개최된 ‘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7명을 선임하였다. 이후 연맹은 20**.*.*.*. ‘20**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박** 등 7명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을 재차 선임한 바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은 「경기도육상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39조의2의 조항을 두어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우 「규약」 제38조제2항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은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4) 연맹 「규약」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와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4. “생략”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시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미이행

연맹은 20**.**.**. '20**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하여 심의하여 연맹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연맹은 20**.**.**. 20**년도 제*차 이사회 개최하고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총 7명⁵⁾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위 사안을 살펴보면, 총회에서 회장에게 위원 구성을 위임하였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위원 선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규약」 제38조제2항의 절차로 위원 선임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사회 동의前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된다.

나.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미제정

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외 경기력향상위원회와 경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력향상위원회와 경기위원회의 경우 금번 종합 정기감사 수감범위인 2021~2023년간 각 개최횟수를 살펴보면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총 8회를 개최하면서 각종 주요대회의 선수선발, 우수 지도자 및 선수 대상 선정 등의 안건을 다루었고, 경기위원회는 해당 3년간 총 1회의 개최실적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위 2개 위원회의 경우 운영 관련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채 지속 운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5) [redacted]

연맹 「규약」 제39조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연맹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9조 제3항⁶⁾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연맹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와 경기위원회를 적정히 운영하여야 하나,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그 효력여부 또한 문제될 여지가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육상연맹 회장은

- 가. 향후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현재 관련 규정없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향후 적정운영을 위하여 본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시어 조속히 운영 관련 규정을 제정하시고, 그 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도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일련번호 : 4]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속기관] 경기도육상연맹

[내용]

1. 업무개요

경기도육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국도비를 비롯한 모든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원인행위를 결정하고 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근거로 회계를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4조(일반 원칙), 제42조(지출원인 행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⁷⁾, 제32조(세금계산서 등)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⁹⁾ 등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7)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⑧ “생략”

9) 「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물품·용역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행위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규정, 지침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회계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 문제가 확인 되었다.

가. 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서 미운영 등 관리 소홀

연맹은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나 수감기간인 `21~`23년도 보조사업에서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례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나. 계약 등 회계처리 부적정

연맹은 보조사업 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보조금을 집행 할 경우 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하나 [표1]과 같이 분할계약 및 회계처리에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또한 집행을 할때에는 지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자료가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되기도 하고 추후 증빙자료를 추가하지도 않고 회계처리를 마무리하였다.

[표1] 분할구매 등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1	2021 ****	현수막 등	* ,***,000	****	분할지출
2	2021 ****	운영용품 등	** ,***,000	****	분할지출
3	2023 ****	보험비	***,590	****	전자세금계산서
4	2023 ****	보험비	* ,***,000	****	전자세금계산서
5	2023 ****	행사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6	2023 ****	판독기 임차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구매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7	2023 ****	광파측정 기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구매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8	2023 ****	유튜브 중계	* ,***,000	****	계약서 미작성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9	2023 ****	행사기획	** ,***,000	****	계약서 미작성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10	2023 ****	접수관리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지출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11	2023 ****	운영팀장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지출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12	2023 ****	메인스텝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지출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13	2023 ****	서브스텝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지출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14	2023 ****	경호팀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지출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15	2023 ****	배번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지출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16	2023 ****	메달제작 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17	2023 ****	트로피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지출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18	2023 ****	판독기 임대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지출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19	2023 ****	광파측정 기임대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지출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20	2023 ****	유튜브중 계	* ,***,000	****	계약서 미작성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21	2023 ****	참가자 기념품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지출 (계약에 준하는 서류 미첨부)

[조 치 사 항] 경기도육상연맹 회장은

보조금 집행 등 회계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계를 담당

하는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문제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증빙자료 등을 보충하여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경기도체육 주의조치

[제 목] 비상근 임원(이사) 실비 지급 개선
[소속기관] 경기도육상연맹
[내용]

1. 업무개요

경기도육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20**년부터 20**년까지 이사회 및 총회를 *회(이사회 *회, 총회 *회) 개최하면서, 각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한 임원 및 대의원에 교통비 명목으로 지출하면서 각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다.

1인 1회 참석당 지급된 금액은 *만원이었으며, 연맹은 이를 20**년 **월부터 *만원으로 인상, 현재까지 지속하여 지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육상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24조의2¹⁰⁾에서는 연맹 임원의 보수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금번 정기종합감사 수감범위인 20**년부터 20**년까지 이사회 및 총회를 총 **회 개최하였고, 각 이사회 · 총회에 참석하는 임원 및 대의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정액지급(1인 1회 참여당 *만원을 정액 지급 하던중 20**년 **월부터 *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각 연도별 지급총액 및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10) 「규약」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표1] 이사회 및 총회 '교통비' 지급 현황

연도	구 분	개최일	교통비 지급		비 고	
			지급총액(원)	세부내역		
	총 계		* ,***,000			
2021	소 계		* ,***,000			
	정기이사회	'**.*.*.*'	***,000	**,000원 × **명		
	2차이사회	'**.*.*.*'	* ,***,000	**,000원 × **명		
2022	소 계		* ,***,000			
	정기이사회	'**.*.*.*'	***,000	**,000원 × **명		
	정기대의원총회	'**.*.*.*'	***,000	**,000원 × **명		
	2차이사회	'**.*.*.*'	***,000	**,000원 × **명		
	3차이사회	'**.*.*.*'	***,000	**,000원 × **명		
	4차이사회	'**.*.*.*'	***,000	**,000원 × **명		
2023	소 계		***000			
	정기이사회	'**.*.*.*'	***,000	**,000원 × **명		
	정기대의원총회	'**.*.*.*'	미지급	-		

「규약」 제24조의 2는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은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비상근임원이라 판단되며, 이런 임원들이 이사회를 참석하는 행위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위라고 보더라도 연맹은 '정액지급'(*만원→**년 **월이후 *만원)이 아닌 「규약」 동 조항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였어야 했다.

하지만 이사회에 참석하는 각 개인에 대한 교통실비 등을 파악하여야 하고, 각 증빙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 사료되며, 비상근임원의 이사회 참석에 대하여 「규약」 제24조의2 '업무수행'이라고 판단하여야 할 만한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더불어 동 조항은 비상근임원에게 국한되어 있으므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에 대한 교통비 지급 또한 전혀 근거 없는 부적정 지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정에 따라 비상근임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이사회 참석수당 등 관련 규정 등의 마련을 통해 지급 근거 마련 후 적정한 지출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육상연맹 회장은

연맹 비상근 임원 및 대의원에게 교통비 명목의 지급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시어, 추후 동 지원사항의 지속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시 이사회 참석수당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적정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개선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전자문서 및 기록물 관리 미흡

[소속기관] 경기도육상연맹

[내용]

1. 업무개요

경기도육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경기도육상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은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제2호에 따라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 관리를 통해 보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현재 문서수발신대장을 직접 서면으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문서발송시 ‘문서24’¹¹⁾를 활용하여 공문 등 발송 후 관련 첨부서류의 경우 연맹(담당자) PC에 저장하여 보존하고 서류를 별도로 출력하여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다.

‘문서24’의 경우 일정기간 도래시 첨부서류가 자동 소멸되어 기록물 보존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연맹 담당자 PC에 보존하고 있으나 기능 고장 등으로 보존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연맹은 현재 경기도체육회관내 입주 단체 종목으로 사무직원이

11) 행정·공공기관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간 양방향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행정안전부 제공)

상주해 있는 종목단체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육상연맹 회장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과도한 행정적 소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회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임직원 수당지급

[소속기관] 경기도육상연맹

[내용]

1. 업무개요

경기도육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통해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 지침」에 따라 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수당(인건비)를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강사비의 경우 단체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임직원에게 강사비 예산의 50%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국도비를 보조받은 대회에서 임직원을 심판, 운영요원 등으로 배정하고 과업을 맡긴 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보조금과 관련된 기준이나 지침에는 다소 상이 할 수 있는 지급으로 강사비의 경우 강사비 지급기준을 따라 지급하되 강사비 예산의 5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수당의 성격이 심판의 경우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육상연맹에 심판 요청을 통해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요청을 하지 않고 내부 임직원을 활용하여 운영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육상연맹 회장은

국도비 보조를 통해 대회 개최 등 사업운영시 보조금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소속기관] 경기도육상연맹

[내용]

1. 업무개요

경기도육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경기도육상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산 및 회계관련 조항을 두어 규정에 딸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규약」제40조(재산의 구분), 제41조(재원), 제42조(잉여금의처리), 제43조(재산의 관리),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제45조(회계연도),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47조(회계감사 등) 재산 및 회계조항을 두고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회계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국도비를 비롯하여 년간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회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도 제정되어있지 않았고 회계관계 직원에 필요한 재정보증보험 조차 가입되어있지 않았다.

[조치사항] 경기도육상연맹 회장은

회계와 관련된 연맹 임직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